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8월 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4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8. 3(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서성민 사무관(044-203-5232)

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
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(8.4) 통과
- 액화천연가스(LNG) 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**이 **8월 4일(화) 국무회의**에서 **심의·의결됨에 따라,**

○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**하는 내용으로 개정·공포된 **「도시가스사업법」**('20.2.4 공포, '20.8.5 시행)이 **8월 5일(수)**부터 **예정대로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**은 **천연가스**를 **선박 연료로 공급**하는 사업으로서,

○ **선박 연료 공급방법**으로는 **충전방식**에 따라 ① **트럭을 이용한 방식**(Truck to ship), ② **선박을 이용한 방식**(Ship to Ship), ③ **탱크를 이용한 방식**(Tank to ship) 등 3가지 방법이 있다.

< 참고 : LNG 벙커링 방식 >



<트럭을 이용한 방식>



< 선박을 이용한 방식 >



< 탱크를 이용한 방식 >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,**

○ 최근 국제해사기구(IMO)의 **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***됨에 따라 **선박연료**로 **액화천연가스(LNG) 사용 증가가 예상****되고 있으나,

* '20년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.5%에서 0.5% 이하로 제한

** 국내 LNG 벙커링 예상수요(에너지경제연구원, 백만톤): ('30) 1.23~1.36 →('40) 3.37~3.43

○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**높은 천연가스 가격** 등으로 인해 **액화천연가스(LNG) 공급 시장 활성화에 한계**가 있어, 이를 **해소할 필요성이 제기**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었다.

□ **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정의

○ **기존 가스시장과 구분**되는 **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**하기 위해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** 정의 규정을 신설

❷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**등록**이 **필요**하며, **민간기업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진출이 용이**하도록 사업수행을 위한 **최소한의 시설* 및 자본금****을 등록요건으로 규정**

*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** 1억원 이상 자본금

❸ 천연가스사업 수출입업 등록 및 수출입 신고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**천연가스를 직접 수입***하려는 경우에는 **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**하여야 하며, **안정적인 저장시설을 확보**하는 차원에서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의 **저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**

*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에게도 천연가스 구매 가능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**시장 기능 활성화**를 위해 **천연가스 수입시 신고의무만을 부과**하여 **기존 가스시장의 물량 및 가격 규제완화***

* 기존 가스시장은 천연가스 수입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, 가스요금은 정부 또는 지자체 승인에 의해 결정

❹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

○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**간 **선박용 천연가스**를 **처분**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, **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**하기 위해 **'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'**를 제외한 **제3자에게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은 원칙적으로 제한**

○ 다만,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**증발가스*와** 천연가스의 **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**를 위하여 **공급이 필요**한 경우**에는 **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을** 허용

*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(氣化)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

** 폐업·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, 가스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·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, 사업자간 액화천연가스(LNG) 거래 허용, 액화천연가스(LNG)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**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**으로 마련된 **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제도를 도입**함에 따라 **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."고 언급하고,

○ "이를 통해 **액화천연가스(LNG) 신규 수요 창출**뿐만 아니라 **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**하다는 점에서 **중요한 의미**가 가진다."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서성민 사무관(☎ 044-203-52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액화천연가스(LNG) 벙커링 개요

□ **(정의)** Bunker*란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의 총칭으로 **LNG벙커링은 LNG 연료추진선에 LNG 연료를 공급**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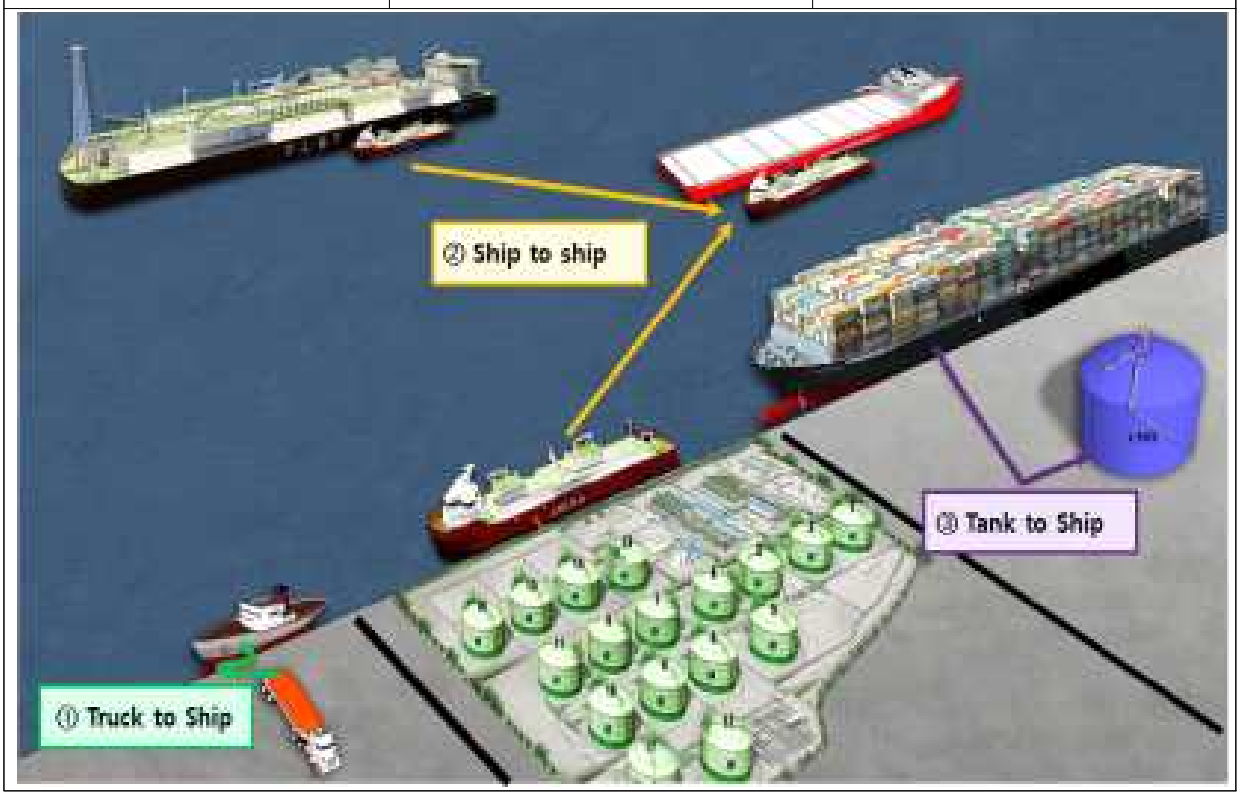
* 어원은 석탄을 연료로 하던 증기선 시절에 선박내 또는 항구에 석탄을 적재하던 저장소(Coal Bunker)에서 유래

□ **(중요성)** 천연가스 분야 신성장산업으로 **①신규 LNG 수요가 창출**되며 **②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산업 활성화** 가능

□ **(유형)** LNG 벙커링 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**①Truck to ship, ②Ship to Ship, ③ Tank to ship** 등 3가지 방법이 존재

< LNG 벙커링 유형 및 개념도 >

① Truck to ship	② Ship to ship	③ Tank to ship
· 소용량 충전시 (1회 충전 90톤 미만)	· 일반적 충전방식 (1회 충전 90톤 ~ 4,500톤)	· 대용량 충전시 (1회 충전 4,500톤 초과)



참고 2 「도시가스사업법」 개정 주요내용('20.2.4 공포)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및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정의** (제2조)

○ 선박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인 '선박용 천연가스사업'과 이를 수행하는 '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' 정의를 신설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** (제10조의11)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도록 규정

□ **잔존 천연가스의 인도** (제10조의11 제4항)

○ 선박을 건조한 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개시·휴업 및 폐업시 신고** (제10조의12)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개시·휴업 또는 폐업시 신고하도록 규정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수출입 신고** (제10조의13)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,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

○ 또한, 수입계약,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 전에 수입·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의 처분제한** (제10조의14)

○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

○ 다만,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와 긴급한 수급 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등 필요시에는 제3자 처분 허용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취소** (제10조의15)

○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,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

□ **시설공사계획 승인 및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** (제39조의2, 제39조의6)

○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추가

□ **청문 및 벌칙** (제43조의4, 제49조, 제54조)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, 수입계약 등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

참고 3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 주요내용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** (영 제3조, 영 제6조의7·8·9, 규칙 제10조의16·19)

○ **민간기업의 벙커링 시장 진출이 용이**하도록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위한 **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*과 자본금****을 사업 **등록요건**으로 설정

*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개 ** 1억원 이상 자본금

- 시설기준 등 **등록요건을 위반**한 경우에는 **사업정지·등록취소** 등 위반행위별 **처분기준**을 마련

○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**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** 경우에는 연간 판매계획량의 **30일분**을 **저장할 시설을 갖추도록** 규정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개시·휴업·폐업 신고 및 수출입 신고** (규칙 제10조의17·18)

○ 선박용 천연가스 **사업의 개시·휴업 및 폐업**시 **30일 이내에 신고**하도록 규정

○ 천연가스 **수입계약·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**하는 경우 **계약체결 예정일부터 30일 이전**에 수출입계획서 등을 **미리 통보**하도록 하고, **계약체결 후 7일 이내**에 **신고**하도록 규정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예외사유 및 방법** (영 제6조의11·12)

○ 폐업·파산 등으로 **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**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**가스제조시설·가스배관시설·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**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박용 천연가스를 **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의 방법**으로 **처분할 수 있도록** 규정

○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**불가피하게 발생**하는 **증발가스를 처분**하는 경우에는 **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의 방법**으로 **처분**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**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** (영 제6조의10)

○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** 예외적으로 **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**를 **선박소유자에게 인도**할 수 있는 **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**로 규정

□ **선박용 천연가스 수급실적 및 현황 보고** (영 제23조)

○ **선박용 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**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**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**하도록 규정

□ **가스공급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** (규칙 제17조)

○ 안전한 선박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**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기준**을 규정